

교직원포상규정

- 제정 : 1987. 12. 1.
- 개정 : 2000. 3. 1.
- 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3. 10. 29.
- 개정 : 2016. 3. 9.
- 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8. 8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교·직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본교 교·직원(용역 포함)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10년 이상 성실히 근속하여 타에 모범이 된 자
2. 학사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향상을 위하여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
3. 사고 및 재해의 미연방지 기타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현저한 자
4. 매년 적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직무능력의 우수함이 인정되어 그 성과에 대해 별도 포상의 필요가 있는 자
5. 본교 발전을 위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낸 자
6. 기타 본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

제3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근속포상 및 공로포상, 성과포상으로 한다.

1. 근속포상 : 전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며, 10년 근속, 20년 근속, 30년 근속, 4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시행
2. 공로포상 : 전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
3. 성과포상 : 전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

제4조(포상방법) ① 근속포상은 법인 이사장이 행하고, 공로포상은 총장이 행한다.

- ② 근속포상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포상할 수 있으며 상장과 별표의 부상을 수여한다.
- ③ 공로포상은 상장과 별표의 부상을 수여한다.
- ④ 성과포상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급여 이외의 특별 포상금을 책정하여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수상자는 업적 및 근무 평정에 있어서 이를 가점으로 반영한다.

제5조(포상의 시기) ① 포상은 매년 개교기념일(9월 25일)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수 공로포상과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일 현재 근속포상 대상년수에 도달한 경우 또는 특

4-1-10 교직원포상 규정

수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.

② 성과포상자의 포상은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후보 추천) ① 공로 및 표창 후보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원 공로상 : 총무처(과)장, 교학처장, 교무과장
2. 직원 공로상 : 총무처(과)장
3. 조교 공로상 : 총무처(과)장
4. 학과 및 단체 표창 : 교무처장
5. 기타 부서와 관계없이 전체 교원 중에서 공로가 지대한 교원은 각 행정처(과)장이 추천

② 근속상 추천은 총무처(과)장이 한다.

③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『별지서식』의 추천서에 공적사항을 기입하여 매년 8월 말일 이전(수시포상분은 수시)에 총무처(과)장에게 각각 인비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적심사) 포상은 전조 제3항의 추천서에 의하여 교원 및 직원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포상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1.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2.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
3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
제9조(근속년수의 계산)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본교와 학교법인 고운학원 산하 교육기관에서 임용일로부터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로 하되 매년 9월 25일 현재로 계산한다. 다만, 정년퇴임자의 경우에는 퇴임하는 일자로 계산한다.

② 휴직 및 정직기간과 임시직 기간은 전항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포상의 특례) ① 각종 경기대회 및 교육훈련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본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공로가 현저한 외부인사 및 단체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여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자의 특전)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.

1. 동순위에 있어서 승진의 우선
2.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
3. 특별휴가
4. 총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자의 경우 징계의 감경

5. 기타 인사관리상의 우대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4-1-10 교직원포상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 표 >

교직원 포상 및 부상 기준표

1. 근속포상

포 상 명	부 상	비 고
10년 근속상	상품권 - 50만원 상당	
20년 근속상	상품권 - 100만원 상당	
30년 근속상	상품권 - 150만원 상당	
40년 근속상	상품권 - 200만원 상당	

2. 공로포상

포 상 명	부 상	비 고
공 로 상	상품권 - 30만원 상당	

3. 성과포상

포 상 명	부 상	비 고
개인 포상	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책정한 특별포상금 (상한액 50,000,000원)	
단체 포상		

